

공동저작물, 공동창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의 단독 이용행위 관련 법적 책임 대법원 판

결요지



저작권법 제48조(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) ④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,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.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.

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도16066 판결

저작권법(2011. 6. 30.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8조 제1항 전문은 “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.”고 정하고 있는데,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

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,

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**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.**

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,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권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.

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, 십수년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